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10점	5점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높은순
			5점	행정처분 건수	사업자 등록 시. 군. 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아동보호 정책	10점	10점	아동관련시설 공사경험건수	실적제출증명원 제출	많은순
	업무 수행능력	10점	5점	기술자등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은순
			5점	업무실적	실적증명서	많은순
	사업 제안서	40점	4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높은순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류 신청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가산점	5점	5점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해당시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3. 업무 실적의 경우에는 10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4. 업무 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기술자 등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기능사 1인, 산업기사는 2인, 기사는 2인, 기술사. 건축사(관련분야 박사 포함)는 3인으로 산정한다.						